의안번호	2213467
의 뢰 인	허영의원
회 답 일	2025.10.13.
추계번호	25D547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26조의2 (사회적대화위원회)	사회・경제의 주요 주체 및 중요 현안별 이해관계당사자 간의 협의・합의・갈등조정을 위한 대화(이하 “사회적대화”라 한다)를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사회적대화위원회를 둠(제1항) 사회적대화위원회는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 동의를 받아 구성함(제2항) 사회적대화위원회는 사회·경제의 각 부문을 대표하는 주요 주체 또는 관계 이해당사자를 균형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제3항) 사회적대화위원회의 운영과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조직 등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함(제4항)	재량규정

Ⅱ.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근거규정
1	안 제126조의2 (사회적대화위원회)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사유

❑ 개정안은 의장의 직무에 국회에서 국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사회적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사회・경제의 주요 주체 및 중요 현안별 이해관계당사자 간의 협의・합의・갈등조정을 위한 대화(이하 “사회적대화”라 한다)를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사회적대화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조직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회·경제의 주요 주체 및 중요 현안별 이해관계당사자 간의 협의·합의·갈등조정을 위한 사회적대화위원회와 유사한 사례로 21대 국회에서 운영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을 참고할 수 있음

○ 21대 국회의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2022~2024년 동안 활동하였으며, 관련 예산집행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표 1] 21대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예산 배분 및 집행내역

(단위: 천원)

연도	비목	배정액	집행액	집행내역
2022	일반수용비	20,000	16,400	민간자문위원회 관련 사례금 지급
2023	일반수용비	88,800	88,800	민간자문위원회 관련 사례금 지급
2024	일반수용비	68,287	5,526	공론화위원회 출범식 준비 및 회의자료 유인비
			47,900	공론화위원회 관련 사례금 지급
			14,860	공론화 용역 조달수수료
	일반용역비	2,450,000	2,448,000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공론화 용역 대금
	사업추진비	4,000	3,999	공론화위원회 회의 지원
	소계	2,522,287	2,520,285	-
		2,631,087	2,625,485	-

자료: 국회사무처

❑ 통상적으로 사회·경제의 주요 주체 및 중요 현안별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조정은 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되는 공론화위원회와 대규모 시민대표단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으나, 구성횟수, 규모, 활동형태, 기간 등을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 공론화위원회는 약 7~15명 규모로 구성·운영되어 대규모 시민대표단이 논의할 의제 및 숙의과정 등을 진행하고, 권고사항을 도출함

- (사례) 연금개혁 공론화과정의 경우, 공론화위원회는 의제범위를 설정하고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의제숙의단을 구성하여 의제를 시민참여형 공론화에 부칠 수 있는 형태로 1단계 숙의를 통해 구체화한 후, 500명 규모의 시민대표단을 구성하여 학습·토의과정을 통해 공론을 형성

○ 다만, 대규모 시민대표단을 통해 의견수렴을 할 경우, 시민대표단의 규모, 활동기간, 형태, 회의개최횟수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차이가 클 것으

로 예상됨

- 시민대표단 규모가 약 500명 규모로 운영된 경우, 공론화용역비는 약 18억원~32억원 규모로 다양함

❑ 또한, 사회적대화위원회의 사무처리 지원을 위한 공무원은 활동기한이 한시적인 경우가 많아 인력충원을 하지 않고 겸무나 전환배치 형식[1]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기 편성예산으로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 업무가 상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 관련 공무원의 증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관련 전문가 활용을 위한 수당은 위원회의 운영지원 사업 예산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사회적대화위원회 구성 횟수 및 규모, 기간 등이 확대될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 가능성이 있음

-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민간자문위원회는 2022년 11월 16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약 1년간 운영되었으며, 운영기간 동안 26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회의참석수당으로 1억 520만원이 집행되었음

❑ 개정안에 따라 사회・경제의 주요 주체 및 중요 현안별 이해관계당사자 간의 협의・합의・갈등조정을 위한 사회적대화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할 경우, 사회적대화위원회가 만들어질 횟수, 규모, 운영형태 및 기간 등과 관련하여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Ⅳ.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Ⅴ. 작성자

❑ 성명

1)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운영 당시 위원회 및 공론화지원단은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겸무 형식으로 운영되었음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

[참고]

[표] 기 설치·운영된 공론화위원회 및 시민대표단 활동 및 예산현황

구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委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 공론화委	경인아라뱃길 공론화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委	연금개혁 공론화委(국회)
주관	산업통상 자원부	국무조정실	국가교육회의	환경부	산업통상 자원부	보건복지 위원회
목적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여부 공론화 진행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진행	아라뱃길 사업의 과거 정책의사결정 과정 분석 및 기능개선안 마련	제1차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공론화 통해 재검토	연금개혁 방안 등에 관한 국민 의견수렴
운영 기간	2013.10. ~2015.6.	2017.7.24. 2017.10.20	2018.4. ~2018.8.	2018.10. ~2021.2.	2019.5~ 2021.4.	2024.1~ 2024.4.
위원회 구성	위원장 1인 포함 15인	위원장 1인 포함 9명	위원장 1인 포함 7명	위원장 1인 포함 15인	위원장 1인 포함 15인	위원장 1인 포함 11인
회의 횟수 (연도별)	4회(2013), 25회(2014), 9회(2015)	93회(2017)	14회(2018)	1~6회(2018) 7~18회(2019) 19~29회(2020) 30회(2021)	16회(2019) 24회(2020) 3회(2021)	9회(2024)
분과委	운영소위원회 (5명)	법률분과(2명), 조사분과(2명), 숙의분과(3명), 소통분과(2명)	조사분과(2명), 숙의분과(2명), 소통분과(2명)	물환경생태 (4명), 거버넌스(5명), 물류(2명), 관광레저(3명)	운영분과(5명) 의제분과(5명) 숙의분과(5명)	숙의분과(3명), 조사분과(2명), 소통분과(1명)
시민 대표단	– (대표단 없는 광범위한 의견 수렴)	471명	490명	지역시민 (120명)	596명 (시민참여형조사)	500명 (시민대표단)
공론화 용역비	실시 (541백만원)	시민참여형 조사 (2,402백만원)	실시 (1,800백만원)	인식조사 (19백만원)	실시 (3,297백만원)	실시 (2,462백만원)
활동 결과	2만 7천여명의 의견 바탕 10개 권고사항 도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등 권고안 도출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 도출	주운기능 축소, 문화관광 확대 등 권고사항 도출	사용후핵연료 정책 전반에 걸친 8개 정책 권고사항 도출	연금개혁에 관한 다양한 의견 수렴
정책 반영 여부	제1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2016.7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 (2017.10월)	권고안 등 반영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 발표 (2018.8월)	공론화委 이행을 위해 후속 연구용역(기능 개선방안 연구용역) 시행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수립 (2021.12월) 고준위 특별법 추진 및 제정(2025.3월)	연금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예산 집행액	77.5억원	37.3억원	18.3억원	10.2억원	53.5억원	25.2억원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